#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9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권영진·엄태영·김승수

서범수 · 김정재 · 인요한

신성범 • 윤영석 • 권영세

박충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

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제11조의2).

####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내용"을 "내용과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견조정"으로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제7조의11부터 제7조의16까지로하고,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5. 사업 시행기간

- 6. 공사 목적 및 사유
-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
-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 2. 주민 의견청취
- 3.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1. 위치 및 면적
- 2. 도로사업시행자
- 3. 사업의 종류
-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

요 사항

- 5. 지형도면
-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고시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타인의토지에의 출입 허가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15.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 는 신고
-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 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 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 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 용할 수 있다.
  - 1.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

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제7조의12(종전의 제7조의7)제1항 중 "제7조의8"을 "제7조의13"으로 한다.

제7조의13(종전의 제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6"을 "제7조의11"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

전의 제4호) 중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를 "제7조의11부터 제7조의14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7조의10"을 "제7조의1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종전의 제4호의3) 중 "제7조의11"을 "제7조의16"으로 한다.

-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 견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광역교통"을 "광역교통"으로 한다.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의5의 제목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을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별 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6호는 제외한다)

- 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의결하 기 위한 분과위원회
-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 회에 우선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6의 제목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경우"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중립적 심의·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6제7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8호"로,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 생사업

제1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의 승인
  -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
교통 개선대책) ① ~ ⑤ (생	교통 개선대책)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u>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u>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
	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
	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
	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
	<u>다.</u>
<u> &lt;신 설&gt;</u>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다. 다만,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u>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u>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수립 시기 및 <u>내용</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신 설></u>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 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 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 <u>내용과 제6</u> ----- <u>내용과 제6</u> 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이견조정 -----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 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 계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 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 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 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 등)

<신 설>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 로를 말하며, 제7조의10에서 같 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 (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 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도로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

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5. 사업 시행기간
- 6. 공사 목적 및 사유
-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 나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 2. 주민 의견청취
- 3.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1. 위치 및 면적
- 2. 도로사업시행자
- 3. 사업의 종류
- 4. 수용 또는 사용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 <u>5. 지형도면</u>
-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 에 따라 도로의 사업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 설>

- ·인가·결정·신고·지정·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제7조의7제4항에 따른 고시가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 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

- 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용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 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 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 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 용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

   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

- 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하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의 따른 도로의 점용 하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

   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의 허가
- 15.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 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 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

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 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 제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하가 또는 신고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
   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
   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
   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 <u>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u> <u> 업용수도의 설치 인가</u>
-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

   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

   장허가
-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만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제50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

<신 설>

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 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공사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

### 권 외의 권리

-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 도로사업시행기

<신 설>

제7조의6 (생략)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위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 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 획 승인"으로 본다. 제7조의11 (현행 제7조의6과 같 음) 제7조의12(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 제7조

#### ② (생략)

-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 ~ ⑥ (생 략)

<u>제7조의9</u> ~ <u>제7조의11</u> (생 략)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현행과	같음)
	(100)	E D

<u>제7조의13</u> (광역교통특별 t	개책의
수립ㆍ시행) ①	제7조
의11	

- 1. ~ 7.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7조의14 ~ 제7조의16 (현행 제 7조의9부터 제7조의11까지와 같음)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 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 통축의 지정·변경·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4의3. 제7조의11에 따른 환승편 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 ③ ~ ⑤ (생 략)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1.·2. (생략) <신 설>
- 3. <u>그 밖에 광역교통</u>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 ⑤ (생 략)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

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u>6</u> . <u>제7조의11부터 제7조의14까</u>
<u> 지</u>
<u>6의2</u> . <u>제7조의15</u>
<u>6.의3</u> . <u>제7조의16</u>
<u>7</u> . ~ <u>9</u>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
3. <u>광역교통</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 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③ <u>권역별 위원회의</u>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
-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

업무	를	효.	율전	으	로	수	행경	計フ	]	위
<u>하여</u>	광	역.	교통	-위	원.	회어	] [	구음	<u>)</u>	<u>각</u>
호의	구	'분	-에	따	른	분	과	위-	원	<u>회</u>
(이히	- c	)	조	및	ス	<del>।</del> ।	조호	યે વે	케	서
"분고	나위	워.	회"i	라	항-1	다)-	름	두	다	

-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6호는 제 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 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과 위원회
-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에따른 갈등사항을 심의·조정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②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u>-----
- <u>과위원회의 당연직</u> ------
- ③ <u>분과위원회</u> ------
-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

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 • 조정

의 · 의결한다. 및 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 ⑤ ----- 분과위원회-----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 |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 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 위원회 운영 등) ① -----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 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 분과위원회-----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② ----- 분과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 원회-----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 개의(開議)하고-----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 ③ 분과위원회-----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 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 ----- 분과위원회--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 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⑤ (현행과 같음)

⑥ ----- 분과위

- 35 -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수 있다.

⑤ (생 략)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 · 단체와 이해관계가있는 경우 <단서 신설>

- 2. (생략)
-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 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 다.

원회
1
<u>경우.</u> <u>다만, 제9조제1항</u>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인 경우로서 위원장이 객관적
·중립적 심의·조정 및 의결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분과위원회
⑦ 분과위
원회

⑧ (생 략)

<신 설>

-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⑧ (현행과 같음)
- ⑨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지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 행과 같음)

- ② ----------. <u>제8호</u>--------- <u>제7호까지</u>-----
  - 1. ~ 4. (현행과 같음)
  - 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5. (생략)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 신지구재생사업

8. (현행 제5호와 같음)

----- <u>시 ·</u> 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 <u>시장·군수·구청장, 광역교통</u> 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 관의 장---.

② (현행과 같음)